

www.mafra.go.kr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시도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시도	부서명	사무실 전화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담당관	02-2133-4461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4971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6522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032-440-4374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062-613-3964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042-270-3845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1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044-300-4323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8
강원도	친환경농업과	033-249-3561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043-220-3615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041-635-2523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063-280-2618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061-286-6331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054-880-3362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055-211-631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163

2024년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알아보기



친환경농업직불금이란

- 목적** 친환경 농가의 일반농가 대비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지급합니다.
- 신청요건**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임업인 및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34조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
- 지급요건** 직불금 사업기간 (전년 11월~당해 연도 10월까지) 동안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5월말~10월)결과 적합으로 통보 받은 경우 직불금을 지급(12월)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인증단계(무농약, 유기)별·품목군(논, 밭작물)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 '24년 예산 : 22,832백만원(국비 100%)
 - ☑ **지급한도** : 0.1~5.0ha/농가당
 - ☑ **지급기한** : 유기 5년(무농약 3+유기 2), 무농약 3년, 유기지속(유기 6년차부터)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밭	논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급 제외 농지

- 사업기간중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과 인증이 유효하지만 아래 해당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①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②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
- ③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 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 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
- ④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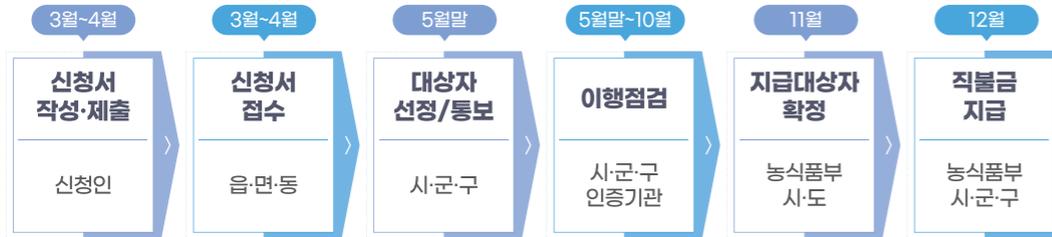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표2

202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알아보기

- 01 친환경농업직불금이란
- 02 직불금 신청
- 03 직불금 지급대상자
- 04 직불금 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
- 05 직불금 지급
- 06 직불금 관련법령
- 07 궁금한 이야기 Q&A



직불금 이렇게 신청해요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구비서류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주의사항

- 신청자 명의로 유효한 친환경인증 정보가 있어야 신청 후 사업대상으로 선정 가능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전년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금년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

* 전년도 11월 1일 이후 신규 인증농가는 당해 연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인증갱신을 통해 차년도까지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내년에 신청가능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선정대상

사업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로서 사업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34조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

선정결과 통보

2024년 5월 31일 까지

시·군·구에서는 신청 요건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 단, 이후 사업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 시기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한 시·군·구에 문의하여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5월말) 되고 이행점검(5월말~10월) 결과 적합으로 통보 받아야 지급 대상으로 확정(11월) 되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

점검기간

2024년 5월말 ~ 10월 31일

- ☑ 시·군·구: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등 확인
- ☑ 인증기관: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등

점검사항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에 전산검증 요청(신청 정보 변경 시에는 수시 요청)



점검 결과 확정

- ☑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인증의 유효성 여부 검증 결과 등을 10월 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 시·군·구는 인증기관의 최종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확인점검 사항을 검증한뒤 사업대상자별 이행점검결과를 확정

확인·점검 사항

- ① 사업기간(전년 11월~당해년 10월)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지 여부
- ②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와의 일치 여부
-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필지 중복신청 및 지원횡수 초과 여부
- ④ 지급한도(5ha) 초과 여부
- ⑤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제외 농지기준(3p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제외)

주의사항

- 사업기간 중 인증 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변경 사유 발생 30일 이내) 신청 정보를 변경해야하며 미 신고 시 직불금 미지급 등 불이익 발생가능
- * 인증이 변경(무농약 → 유기)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
- *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정보가 승계 처리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자 등 신청정보 변경 가능

직불금 이렇게 지급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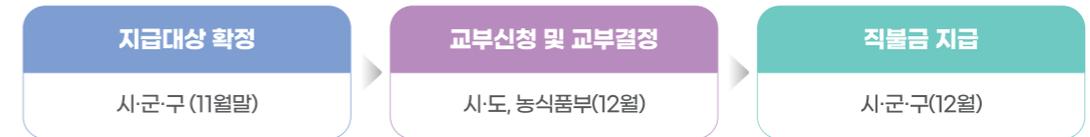
지급대상 확정

사업 신청 후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5월말)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5월말~10월)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 등을 지급 대상으로 확정합니다.

지급시기

11월말 ~ 12월

- ☑ 각시·도(시·군·구)에서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친환경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12월)
- ☑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 여부를 시·도(시·군·구)에 문의 하여 확인 가능(12월)



부정수급 등 환수대상

-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기간 내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불금 회수
-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 등은 향후 3년간 선정 제한



직불금 관련법령 어렵지 않아요

친환경농업직불 시행 근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1조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 1.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시행 절차 등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26조 (친환경농업직불금 관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급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1조 (지급대상농산물)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2조 (지급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3조 (지급 대상자의 선정 신청)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4조 (지급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23조에 따른 신청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5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6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궁금한 이야기 Q&A

01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산출근거는?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배 품목별 평균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감안하여 지급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02 '12년도에 무농약을 제외한 유기만 지급기간을 연장(3년→5년)한 이유는?

▶ 무농약 인증의 경우 일반 관행농업과의 소득차를 해소하는 데 약 3년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반면 유기인증은 최소 4~5년 소요됩니다.
*유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무농약인증 농가가 유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03 '12년부터 유기직접지불금 지급기간을 연장(3년→5년)하면서 그 대상에 '10년까지 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를 제외한 이유는?

▶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지만 '10년까지 직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는 4~5년 이상 친환경농업을 이행하여 재배기술이 향상되고 관행농업에 비해 소득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04 '15년부터 지속직접지불금을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유기 농가로 한정 한 이유는?

▶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재배 지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유기재배 실천 농가로 한정하였습니다.

05 유기지속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5년 또는 5회(무농약 3회+유기 2회) 지급이 완료된 필지에서 계속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와 '10년까지 친환경직접지불금 3회 수령 한 필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면 유기지속직접지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06 상양삼, 밤,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품목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임야 필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된 필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 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07

친환경인증 필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어디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인증농지 합계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08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이 5ha인 이유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등 수급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 여건 하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대다수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산하도록 지급면적 상한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영주와 배우자(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가 별도로 인증을 받고, 각각 직접지불금 신청하더라도 경영체당 5ha를 초과할 수 없음

09

기본형직불제 등 타 직접지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임업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경영이양 직불금과는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10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24년 3월에 친환경인증을 처음 받은 자가 '24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이 가능한가?

▶ 다음 연도 사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기간(전년 11.1.~10.31.) 안에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12

사업기간 중 인증단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직불금 단가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된 인증단계의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이 지급됩니다.

1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신청한 대상자가 사업기간 중간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사업을 승계 또는 양도 한 경우 상속 또는 양수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이 가능한가?

▶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인증을 승계한 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에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한 경우 직접지불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4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 사업 기간 중 인증 갱신이 이루어져 직불금 지급 시점에 신청한 필지에 대한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단, 사업기간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15

친환경직접지불금 지급 완료 후, 친환경인증이 취소, 종료 등 경우에 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하는가?

▶ 사업 대상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 (전년11~10월) 인증취소, 인증기간 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16

인증농가가 2,000㎡(직불금 수령완료)외 추가로 500㎡를 인증 받고, 직접지불금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한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한도 면적은 0.1ha~5ha로 지급면적은 최소 0.1ha 이상이어야 하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17

'17년 무농약, '18년 유기, '19년 무농약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22년 무농약 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 가능한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기본적으로 3회 지급이 원칙이므로 '22년도 무농약직불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기에 한해 2회 추가 지급하므로 해당 농가가 유기 인증을 취득하고 유기직접지불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18

10.31일까지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인증기관은 10.31일까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적합으로 회신하고 이후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로 통보해야 하며 담당기관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